



내진설계 위조사건, 제도개선이 우선이다.

강 석 규 우리회 부회장
(주)상원구조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우리 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강길 회원님의 글을 보면 내진설계 위조사건을 대하는 국토부와 건축사회 등 유관 단체의 반응은 정말 우리를 실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일본에서 발생한 내진설계 위조사건과 비교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회지 2009년 9월호 참조)

1. 누가 하였는가?

일본은 건축사(구조)가 구조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이 보유하여야 할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였으며, 한국은 건축사가 구조설계도 수행하지 않고 그냥 행정서류에 수행한 것처럼 위조하여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고 건축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한 사건입니다.

2. 언제, 무엇을 하였는가?

일본은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구조계산서 작성 과정에서 구조해석 모델과 입력수치를 조작한 것입니다만, 한국은 아예 구조계산 단계 없이 건축사가 임의대로 수치를 조작하여 허가과정에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내진) 안전확인서] 양식에 이를 적어 제출한 것이며, 허가권자는 아무런 심사 없이 허가한 사건입니다.

3. 왜 하였는가?

일본은 건축물의 보유성능을 과대평가함으로써 건축비를 줄이고, 구조설계를 간편하게 하며, 내진설계의 귀재라는 주변인식을 유도하여 영업확대를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내진설계 전문가도 아닌 건축사가 행정대리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악용하여 하지도 않은 내진설계를 하였다고 행정서류를 꾸며 관청, 건축주, 시공사, 국민 모두를 기만한 사건이며, 영업과 업무 편의를 제외하고는 그 목적이 없는 정말 후진국 형태의 창피한 사건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축물의 내진설계 개선방향 마련 등을 위해 관계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 안전으로 신축 건축물의 내진설계 내실화 방안과 구조안전 확인서가 허위 제출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책으로 내진설계 제도가 건축설계, 인허가 실무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리,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적극 대처토록 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 낼 것인지 의문입니다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